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30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이정문・문진석・황운하

김윤덕 · 김원이 · 송갑석

김철민 · 민형배 · 이용빈

안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 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,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.

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3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.

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절반이 넘는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,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서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 및 제7조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3(생활조정수당)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 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보훈 처장은 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의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 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④ 참전유공자와 그의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 조사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.
 - ⑤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진료비용"을 각각 "진료비용 및 약제비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진료비"를 "진료비용·약제비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 </u> | 제6조의3(생활조정수당) ① 국가 |
| | 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 |
| |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 |
| | 급할 수 있다. |
| |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|
| |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 및 |
| |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|
| |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| |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|
| | 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는 국 |
| | 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|
| |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 |
| | 우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 |
| | 라 참전유공자와 그의 부양의 |
| | 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|
| |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 |
| |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|
| |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 |
| | 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 |
| |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|
| | ④ 참전유공자와 그의 부양의 |
| | 무자의 생활수준 조사를 위한 |
| |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3 |

제7조(의료지원) ① 참전유공자가 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「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)에 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부담한다.

② 국가는 65세 이상인 참전유 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 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 하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 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| ⑤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|
|------------------|
| 지급의 신청방법·절차 등에 관 |
|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|
| 으로 정한다. |
| 제7조(의료지원) ① |
| |
| |
| |
| |
| 진료 |
| <u>비용 및 약제비용</u> |
| |
| |
| |
| <u>.</u> |
| ② |
| |
| |
| |
| <u>진</u> |
| 료비용 및 약제비용 |
| |
| |
| |
| <u>,</u> |
| |

브터 게Qㅈ이5까지르 즈요하다

|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| 3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또는 <u>진료비</u> 지원의 방법·절차· | <u>진료비용·</u> 약제비용 |
| 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| |
|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|
| | <u>.</u> |